

신구조문대비표
「관세법 시행규칙」

관세법 시행규칙 [기획재정부령 제872호, 2021. 12. 13., 일부개정]	관세법 시행규칙 [기획재정부령 제881호, 2021. 12. 31., 일부개정]
<p>제46조(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등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.</p> <p>1.1의2. (생략)</p> <p>2. 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물품: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</p> <p>가. 제59조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체가 수입신고하는 경우: 100분의 30(202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)</p> <p>나.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(이하 “한국표준산업분류표”라 한다)상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체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: 100분의 50</p> <p>3.4. (생략)</p>	<p>제46조(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.</p> <p>1.1의2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물품: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</p> <p>가. 제59조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체가 수입신고하는 경우: 100분의 30(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)</p> <p>나.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(이하 “한국표준산업분류표”라 한다)상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체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: 100분의 50</p> <p>3.4. (현행과 같음)</p>